

－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－

專門委員 檢討報告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6년 4월 14일

○ 회부일자 : 2006년 4월 17일

제안 이유

○ 이 조례의 지역혁신협의회, 지방분권·행정혁신협의회, 삶의질향상협의회 등 3개협의회에 부의장 직을 신설하여 의장 사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등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주요 내용

○ 지역혁신협의회, 지방분권·행정혁신협의회, 삶의질향상협의회에 부의장 1인을 두어 의장 사고시 직무를 대행토록 함 (안 제9조제1항, 안 제13조제1항, 안 제17조제1항)

※ 충청북도발전협의회는 공동의장(도지사과 민간대표자 1인)을 두고 있어 부의장을 두지 아니하여도 회의운영에 지장이 없음.

□ 검토 의견

-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-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협의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의장 사고시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지역혁신협의회 등 3개협의회에 부의장을 두고,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붙임 : 충청북도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